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11월 13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제10차 행정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획담당관 김연주)

가. 제안이유

-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임사무 일부 신설
 -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(안 별표 제46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묵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의 정비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,
 - 안 별표 제46호에 「의료법」에서 구청장에게 지정된 “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”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신설.
- 검토 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「의료법」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며,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1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규칙」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」 위임사무로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 사무로 신설(안 별 표 제2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의료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인권·부패·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: 생략

1) 「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(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46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 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등록 나.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	○ 「의료법」 제38조 (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)	보건소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<u>〈신 설〉</u>	[별표] 위임사무		
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<u>46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</u> 가. 등록 나.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	<u>○ 「의료법」 제38조 (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)</u>	<u>보건소장</u>